

#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89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문대림·윤준병·문금주  
임호선·정춘생·김한규  
김동아·이연주·박지원  
최민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재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수색·구조 활동의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색·구조 역량은 기상 악화, 수심의 깊이, 첨단장비의 한계 등 기술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투입에 대한 근거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처리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색·구조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 발생 시 국가의 수색·구조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구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해상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의 수색활동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를 통한 신속한 구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수색·구조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 다. 국가는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수색·구조 활동 개시 전 미리 지급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국가는 수색·구조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해상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국가는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수난구조업체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자 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의 수색활동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를 통한 신속한 구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해상사고”란 해상에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 등으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3. “실종자”란 해상사고로 인하여 생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실종자 또는 실종자가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

다.

6. “민간수난구조업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해상에서 수색·구조·인양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해상사고 발생 시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실종자 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는 국가의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종자 수색·구조 활동 및 지원)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수색·구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색·구조 비용의 선지급) ① 국가는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수색·구조 활동 개시 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색·구조 비용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색·구조 비용을 산정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수색·구조 비용 선지급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구상권 행사)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색·구조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해상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민간수난구조업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수난구조업체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종자 가족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자 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를 실종자 가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수색·구조 활동이 진행 중인 해상사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